고객확인에 관한 MAS 고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CDSA는 모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 줍니다. 금융기관의 예방적 의무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부문별로 발하는 별도의 규범 체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에 관한 MAS 고시 626(MAS Notice 626)입니다. 현행판은 2024년 3월 28일자로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제E편 제I장에서 살펴본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section 16에 근거하여 발해졌으며, 싱가포르의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 금융회사, 보험회사, 자본시장 중개업자, 금융자문업자, 신탁회사, 지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병행 고시가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각 부문의 업무에 맞게 조정되었을 뿐 대부분 동일합니다.[12]

각 고시에는 MAS의 기대 사항을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범죄를 창설하지는 않지만, MAS는 검사에서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침은 MAS가 주제별 점검 후 발표하는 정보보고서 및 회람과 함께 촘촘한 연성법 체계를 이룹니다. 그 실무상 비중은 형식적 지위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시는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자금세탁에 대한 모든 언급에 확산금융이 포함된다는 새로운 정의였습니다.[3] 이 개정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FATF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무역·해운 허브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H편 제IV장에서 제재와 관련하여 이를 살펴봅니다.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시는 금지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은행도 익명 계좌나 가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거래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고객의 자산이 범죄수익이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고객확인 의무는 정해진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은행이 고객과 거래관계를 수립할 때, 또는 기존 고객이 아닌 사람을 위해 2만 달러를 넘는 거래를 수행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한 모든 국내 전신송금과 1,500달러를 넘는 모든 국외 전신송금도 포함됩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이전에 얻은 정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목록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비계좌 고객(walk-in customer)을 위한 디지털 토큰 거래와 가치 이전도 포함됩니다.

고객이 이러한 기준금액 아래에 머물기 위해 거래를 더 작은 금액으로 쪼개고 있다고 의심하는 은행은 그 거래들을 하나로 취급해야 합니다.[4] 기준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이 첫날부터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프라이빗 뱅킹에서는 이 기준금액이 별 의미가 없지만, 환전상과 송금 대리인의 업무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고객확인은 고객을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서류로 그 신원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또한 고객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연인, 고객의 관련 당사자, 실질적 소유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시는 실질적 소유자를 고객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그를 위하여 거래가 수행되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자연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인이나 법적 약정에 대해 궁극적인 실효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5] 신탁, 재단, 여러 층의 소유 구조를 가진 회사의 경우 이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FATF 평가가 보여 주었듯이, 이 지점은 또한 제도가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주요인물과 강화된 고객확인

위험이 더 높은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 대신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고시는 각 은행이 고객, 실질적 소유자 또는 고객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정치적 주요인물이거나 그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자인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보공유 플랫폼 COSMIC에 참여하는 은행은 그 플랫폼을 통해 받은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명한 공적 직무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 장관, 고위 공무원, 고위 사법 또는 군 관료, 국영기업의 고위 임원, 고위 정당 간부, 입법부 의원, 국제기구의 고위 경영진의 직무가 포함됩니다.[6]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은행은 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전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그 관계를 강화된 지속적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시는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국제기구 직원, 퇴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허용합니다. 다만 관계가 더 높은 위험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연성을 거두어들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재직 중인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은 항상 강화된 체제 전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치 엘리트와 기업 엘리트가 겹치는 아시아 국가 출신 고객이 대부분인 자산관리 중심지에서, 이는 고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7]

재산 형성 경위와 그 입증

재산 형성 경위(source of wealth)와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의 구분은 프라이빗 뱅킹의 핵심입니다. 고시 626 지침은 재산 형성 경위를 고객의 전체 재산의 기원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이후의 재산을 낳은 종잣돈과 받은 증여가 포함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됩니다. 자금 출처는 관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의 기원을 말합니다. 은행은 자금이 이체되어 온 다른 기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한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그 자금을 만들어 낸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8]

지침은 은행이 COSMIC을 통해 받았든 다른 방법으로 받았든 이러한 정보를 입증할 것을 기대합니다. 적절한 수단으로는 신탁증서, 급여 내역,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내역서, 감사 재무제표, 현장 방문, 상속의 경우 유언장 사본, 부동산 매각의 경우 소유권 이전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침은 경험에서 얻은 경고를 덧붙입니다. 가정과 기준치는 은행이 고객 재산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 설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재산 형성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잔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와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9]

이러한 기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MDB 사건이 드러나기 전인 2014년 6월에 이미 MAS는 프라이빗 뱅킹 통제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관들이 가족 배경, 투자 이력, 사업 활동, 직업 경력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이를 공개 자료와 서류에 비추어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기술했습니다.[10] 제E편 제VI장에서 다루는 2025년 7월의 제재는 많은 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문서로 마련해 놓고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이러한 경험에 대응하여 입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흔한 오해

은행이 여권과 공과금 고지서를 파일에 보관하면 고객확인 의무가 끝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고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와 신탁의 모든 층 뒤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의 식별, 관계의 목적에 대한 이해, 지속적 모니터링, 그리고 고위험 고객의 경우 고객 전체 재산의 기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신분 서류는 은행에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려 줍니다. 감독당국은 고객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전신송금, 기록, 디지털 토큰

고시는 또한 전신송금에 관한 FATF 규칙을 이행합니다. 1,500달러를 넘는 국외 송금의 경우 송금 은행은 지급 메시지에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해진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에는 축소된 정보로 충분합니다. 디지털 토큰의 가치 이전에 관한 병행 규칙은 같은 논리를 가상자산에 적용하며, 이는 제K편 제I장에서 살펴봅니다.

기록 보존 규칙은 수사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은행은 고객확인 정보와 계좌 파일을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은 거래 완료 후 최소 5년간, 각 거래를 기소를 위한 증거로 재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11]

주

1. MAS Notice 626,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Banks*, 2024년 3월 28일, 2025년 6월 30일 최종 개정, paras 1.1–1.2. ↩
2. 다른 부문을 위한 MAS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고시 시리즈(머천트 뱅크용 Notice 1014, 직접 생명보험사용 Notice 314, 자본시장 중개업자용 Notice SFA04-N02, 금융자문업자용 Notice FAA-N06, 신탁회사용 Notice TCA-N03, 지급서비스 제공자용 Notice PSN01 포함)에 관해서는 MAS 웹사이트의 “Anti-Money Laundering” 섹션 참조. ↩
3. MAS Notice 626, 2024년 3월 28일, 2025년 6월 30일 최종 개정, para. 2.1, 각주 1 및 Endnotes on History of Amendments: “MAS Notice 626 (Amendment) 2025 with effect from 1 July 2025.” ↩
4. MAS Notice 626, para. 6.1; MAS Notice 626, para. 6.2; MAS Notice 626, para. 6.3(a), (b), (d), (f) 및 (g); MAS Notice 626, para. 6.3(c) 및 (e); MAS Notice 626, para. 6.4. ↩
5. MAS Notice 626, para. 2.1, “beneficial owner”의 정의.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6. MAS Notice 626, paras 8.1–8.2; MAS Notice 626, para. 8.1, “prominent public functions”의 정의. ↩
7. MAS Notice 626, para. 8.3(a)–(c); MAS Notice 626, para. 8.4. ↩
8.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2024년 3월 28일, 2025년 7월 1일 최종 개정, paras 8-5-5 및 8-5-6;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para. 8-5-6: 은행은 “should not limit its source of funds inquiry to identifying the other FI from which the funds have been transferred, but more importantly, the activity that generated the funds”. ↩
9.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para. 8-5-7;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para. 8-5-7: 가정과 기준치는 “should not be used to justify or support circumstances or explanations provided by the customer or beneficial owner if there are reasons that cast suspicion on their source of wealth or source of funds”; MAS, *Guidelines to MAS Notice 626*, para. 8-5-7A. ↩
10.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Guidance on Private Banking Controls*, Information Paper, 2014년 6월, paras 3.13–3.14. ↩
11. MAS Notice 626, paras 11.4–11.5(1,500싱가포르달러 이하 및 초과의 국외 전신송금); MAS Notice 626, para. 11A(1,500싱가포르달러 이하 및 초과의 가치 이전); MAS Notice 626, paras 12.2(b) 및 12.3(a)–(b).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